

투자설명서 주요 변경사항

효력발생일 : 2021년 12월 01일

▶ 투자신탁명:

피델리티 EMEA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피델리티 미달러 채권 증권 자투자신탁 H (채권-재간접형)

피델리티 미달러 채권 증권 자투자신탁 UH (채권-재간접형)

▶ 주요변경내용:

- 투자신탁 명칭 변경
- 동일한 투자전략 하에 모투자신탁의 투자방식 일부 변경 및 이에 따른 제반 변경 사항 반영
- 투자신탁 유형 변경
- 집합투자업자보수 변경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변경
- 종류(클래스) 신설, 말소, 명칭 및 가입자격 변경
- 참조지수 변경
- 글로벌 투자설명서 반영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등)
- 법령 반영 (자본시장법 개정 등)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고난도상품 해당여부, 간이투자설명서 보수비용 정보 등)
- 위험문구 추가
- 관련 모투자신탁 변경 반영 (투자신탁 명칭 변경 등)
- 정보 업데이트
- 기재 수정 등

▶ 변경내용:

피델리티 EMEA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문서전반	투자신탁 명칭 변경	피델리티 EMEA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피델리티 EMEA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문서전반	관련 모투자신탁 변경 반영	피델리티 EMEA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피델리티 EMEA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문서전반	모투자신탁의 투자방식 일부 변경	(변경/삭제) <u>‘EMEA 관련 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내용</u>	(변경/추가) <u>‘EMEA 관련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내용</u>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전반	모투자신탁의 투자방식 일부 변경에 따른 투자신탁 유형 변경	주식형	주식-재간접형
문서전반	모투자신탁의 투자방식 일부 변경에 따른 운용위탁관계 변경(종료)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 업무(환헤지 거래의 운용·운용지시 업무 제외) 위탁: <u>FIL Investments International</u>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 업무(환헤지 거래의 운용·운용지시 업무 제외) 위탁: <u>FIL Investments International</u> 과의 운용위탁관계 종료. 다만,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종전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u>FIL Investments International</u> 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함. 환헤지 거래의 운용·운용지시 업무 위탁: FIL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피델리티 EMEA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전반	기재 수정	자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	자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추가)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문서전반	기재 수정	-	(문구 업데이트, 명확화, 통일, 위치 이동 등)
문서전반	종류(클래스) 명칭 변경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I)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I) 수익증권
문서전반	종류(클래스) 말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계열사자금 (N) 수익증권	(삭제)
문서전반	종류(클래스) 신설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F)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10% 판매회사보수율 : 연 0.05%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35%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2%
문서전반	참조지수 변경	(2021년 11월 30일까지) <u>MSCI Emerging EMEA 5% Capped Index Hedged to KRW</u> * MSCI Emerging EMEA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Emerging EMEA) Index: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한 이머징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지수. * <u>MSCI Emerging EMEA 5% Capped Index Hedged to KRW: MSCI Emerging EMEA 지수에 대해 한국 원화로 헤지한 지수로서, 벤치마크 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단일 종목에 대해 5% 상한선이 적용됨</u>	(2021년 12월 1일 이후) <u>95% MSCI Emerging EMEA Capped 5% Index + 5% KRW Call Index</u> * MSCI Emerging EMEA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Emerging EMEA) Index: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한 이머징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지수. * <u>MSCI Emerging EMEA Capped 5% Index: MSCI Emerging EMEA 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단일 종목에 대해 5% 상한선이 적용됨</u>
문서전반	기재 명확화	(...)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인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요약정보	정보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내용 기재	(업데이트) *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되는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신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델리티 EMEA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요약정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	(추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 없음 (추가) 총 보수·비용 정보 (외국 집합투자기구 보수·비용 포함) *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되는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신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모투자신탁의 투자방식 일부 변경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 (주식형)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 (재간접형)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	(추가)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 없음
3. 모집예정금액	기재 명확화	주 1) 이 투자신탁은 60,000,000,000,000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본 집합투자기구는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 1) 이 투자신탁은 60,000,000,000,000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1좌=1원, 펀드설정일 기준) 단위로 모집합니다. 본 집합투자기구는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모투자신탁의 투자방식 일부 변경 정보 업데이트	-	(추가) 2021.12.01: - 명칭 변경 (피델리티 EMEA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 피델리티 EMEA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동일한 투자전략 하에 투자방식 일부 변경 ('EMEA관련 외국 주식'에 투자 -> 'EMEA 관련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및 이에 따른 제반 사항 변경 (투자신탁 유형 (주식형 -> 주식-재간접형), 참조지수 등) - 운용보수 인하 (0.80% -> 0.10%) - 일반사무관리보수 인하 (0.028% -> 0.022%) - 종류 F 신설, 종류 N 말소, 종류 명칭 변경 (종류 CI -> 종류 I), 종류 W 및 종류 I 가입자격 변경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기재 수정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이 신탁계약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입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피델리티 EMEA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의 투자방식 일부 변경 정보 업데이트	운용현황 등	(업데이트)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나. 수익구조	모투자신탁의 투자방식 일부 변경	구조도, 수익구조도 등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정보 업데이트	판매수수료선취형(A) 및 판매수수료미징구형(C)의 총비용 일치 시점 등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종류(클래스) 신설 및 말소	집합투자기구의 특징(기타) <u>계열사 자금(N): 모투자신탁의 초기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u>	집합투자기구의 특징(기타) <u>기관 (F): 기관투자자, 가입자격에 명시된 금액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u>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라. 모자형 구조	모투자신탁의 투자방식 일부 변경	[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라. 모자형 구조	기재 추가	= (...) =	(2) 당해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명칭: 피델리티 EMEA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2009년 4월 15일 (...) ※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투자신탁의

피델리티 EMEA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설명서(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집합투자기 구의 구조 마. 재간접형 구조	모투자신탁의 투자방식 일부 변경	-	<p>마. 재간접형 구조</p> <p>모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100%까지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모투자신탁은 주로 피델리티펀드 - EMEA펀드 (Fidelity Funds - Emerging Europe, Middle East and Africa Fund,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합니다.</p>
7.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목적	모투자신탁의 투자방식 일부 변경 글로벌 투자설명서 반영	<p>가.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p> <p>이 투자신탁은 MSCI Emerging EMEA 지수에 따라 신흥 시장으로 간주되는 개발도상국인 중부유럽, 동유럽(러시아 포함), 남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영업활동의 대부분이 동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해외 기업의 증권에 주로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장기적인 자본이익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합니다. 수익자는 주식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p> <p>(...)</p> <p>나.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p> <p>모투자신탁은 MSCI Emerging EMEA 지수에 따라 신흥 시장으로 간주되는 개발도상국인 중부유럽, 동유럽(러시아 포함), 남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영업활동의 대부분이 동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해외 기업의 증권에 주로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장기적인 자본이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 주식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p>	<p>가.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p> <p>당해 투자신탁은 그 자산의 100%까지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p> <p>(...)</p> <p>나.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p> <p>모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피델리티펀드 - EMEA펀드(Fidelity Funds - Emerging Europe, Middle East and Africa Fund)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모투자신탁은 환율변동 위험에 대한 헤지를 수행하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최고 95.5% 수준입니다.(...)</p>

피델리티 EMEA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p>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u>집합투자업자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 외화자산의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하고자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최고 95.5% 수준으로 할 것입니다. (...)</u></p> <p>=</p>	<p>(추가) 다. <u>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등</u></p> <p>(1) <u>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u></p> <p>당해 투자신탁이 투자목적 달성을 위하여 <u>선정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피델리티펀드 - EMEA펀드(Fidelity Funds - Emerging Europe, Middle East and Africa Fund)로서, 이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MSCI EM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지수에 따라 신흥시장으로 판단되는 국가들을 포함, 중부유럽, 동유럽, 남유럽(러시아 포함), 중동 및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국가에 그 본사를 두고 있거나 사업활동의 대부분이 당해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회사의 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u></p> <p>(2) <u>외국 집합투자에 대한 투자 필요성 및 선정 기준 등</u></p> <p>집합투자업자는 <u>외국 집합투자기체인 피델리티펀드 - EMEA펀드(Fidelity Funds - Emerging Europe, Middle East and Africa Fund)의 투자목적 및 방침, 투자전략, 운용성과 등에 주목하였고,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프로파일, 예상 시장 점유율, 펀드 규모, 파생상품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선정하였습니다.</u></p> <p>집합투자업자는 <u>외국 집합투자기구를 선정시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u></p>

피델리티 EMEA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설명서, 제안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고, 위험평가(운영위험, 재무위험, 자금세탁방지 관련 위험, 유동성 위험 등), 이해상충여부, 한국에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운용 제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2)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모투자신탁의 투자방식 일부 변경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및 취득 한도 변경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모투자신탁의 투자방식 일부 변경에 따른 투자제한 변경 기재 수정	(2) 모투자신탁 (가)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 사업의 수익권을 포함합니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파생결합증권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2) 모투자신탁 (가)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 (삭제) (삭제)

피델리티 EMEA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p>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일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p> <p>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p> <p>8. <u>집합투자재산을 외국집합투자증권등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u></p> <p>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외국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하는 행위</p> <p>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외국 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같은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외국집합투자증권등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삭제)</p> <p>(삭제)</p> <p>(...)</p> <p>6. (i)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u>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와 (ii)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u>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u> 다만, <u>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u></u></p>

피델리티 EMEA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 경 후
		=	<p>가. <u>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합니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습니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영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u></p>
		=	<p>나. <u>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합니다)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u></p>
		=	<p>다. <u>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영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u></p>
		=	<p>라. <u>위 본문 (i)과 관련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u></p>

피델리티 EMEA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p>(...)</p> <p>라.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외국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하는 행위</p> <p>마.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외국집합투자증권등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p> <p>(...)</p> <p>(다) 모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2).(가).2.호의 본문 및 5호부터 8호 가목 및 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p>	<p>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p> <p>8.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9. 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p> <p>(...)</p> <p>(다) 모투자신탁 최초 설정일 또는 모투자신탁이 '주식형'에서 '주식-재간접형'으로 변경 효력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간은 나.(2).(가).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p>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의 투자방식 일부 변경 글로벌 투자설명서 반영	=	<p>(추가)</p> <p>다.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p> <p>[표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모투자신탁의 투자방식 일부 변경	<p>(2)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p> <p>=</p> <p>=</p>	<p>(2)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p> <p>모투자신탁인 피델리티 EMEA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합니다.</p> <p>(3)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p>

피델리티 EMEA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p>당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외국 <u>집합투자기구인 피델리티펀드</u> - <u>EMEA펀드(Fidelity Funds - Emerging Europe, Middle East and Africa Fund)</u>의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p>
9. <u>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u>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정보 업데이트	관련 국가 현황 등	(업데이트)
9. <u>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u>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모투자신탁의 투자방식 일부 변경	외국 <u>집합투자기구</u> 설립국가 현황	(추가)
9. <u>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u>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모투자신탁의 투자방식 일부 변경		<p>(추가)</p> <p>(다) <u>외국</u> <u>집합투자기구</u>가 주로 투자하는 지역의 투자위험</p> <p><u>외국</u> <u>집합투자기구</u>가 투자하는 일부 시장은 여전히 초기 발전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이 지역의 국가는 정치, 경제, 사회 및 규제와 관련된 신흥시장의 위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p> <p><u>신흥</u> <u>국가</u>에 대한 공통적 주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통화관련위험</u> 및 <u>통화정책변경</u> - <u>통화가치절상</u>은 선별된 섹터에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 • <u>정치적 불확실성</u> - 몇몇 <u>신흥</u> <u>시장</u>의 <u>정치적 불안정성</u>은 <u>외국인직접투자</u>를 위축시키고 <u>장기적 경제성장</u>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u>유동성</u> - <u>뉴프런티어</u> <u>국가</u>에 <u>속한</u> <u>기업</u>들은 일반적으로 <u>중소규모</u>의 <u>자본금</u>을 가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u>기업</u>들의 <u>주식</u>은

피델리티 EMEA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p>유동성이 적을 수 있습니다.</p> <p>(추가)</p> <p>(라) 외국 집합투자기구 위험관리 전략</p> <p>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위험관리 전략으로 집합투자업자는 매월 운용보고서를 입수하며, 운용보고서는 펀드 성과, 성과 지표, 포트폴리오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추가적으로 운용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그러나 당해 투자신탁, 모투자신탁 및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위험관리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p>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나. 수익구조	모투자신탁의 투자방식 일부 변경	=	<p>(추가)</p> <p>모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투자신탁으로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또한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모투자신탁의 투자방식 일부 변경 기재 수정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p>(...)</p> <p>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p> <p>또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인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p> <p>*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모투자신탁의 투자방식 일부 변경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위험문구 추가	=	<p>(추가)</p> <p>국가위험: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p>

피델리티 EMEA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기재수정	(...) = = = (...) = =	있습니다.(...). (...) 재간접투자위험: 모두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므로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격조정정책관련 위험: 모두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가격조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 위험: 모두자신탁은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외국 증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국 집합투자기구 설립지 국가 위험: 모두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룩셈부르크에서 설립되었으며, 룩셈부르크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습니다.(...) 외국 집합투자업자 관련 위험: 모두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경영 및 재무상태, 운용인력의 교체 등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모두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투자 관련 업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	모투자신탁의 투자방식 일부 변경 글로벌 투자설명서 반영 정보 업데이트 기재 수정	-	(추가) [외국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기타 투자위험]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델리티 EMEA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모투자신탁의 투자방식 일부 변경 위험등급 관련 유의문구 추가	-	(추가) 참고로, 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던 모투자신탁은 2021년 12월 1일자로 관련 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게 됩니다. 상기 위험등급 및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 정보는 이러한 변경이 시행되기 이전인 최근 결산일(2020년 11월 25일)로부터 이전 3년간 연환산 표준편차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1. 매매, 전환, 기준가. 매매	종류(클래스) 신설, 말소, 명칭 및 가입자격 변경	(다) 수익증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합니다.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W)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일임형 계좌, 특정금전신탁, 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신탁채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D) 수익증권 :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500억원 이상 투자하는 법인,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계열사자금 (N) 수익증권 : 모투자신탁의 초기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집합투자업자의 모회사투자일 현재 현지 외환시장의 환율을 기준으로 미화 1백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원화를 투자하는 경우	(다) 수익증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합니다.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W)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일임형 계좌, 특정금전신탁, 법 제 105 조 규정에 의한 신탁채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u>보험업법 제 108 조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u>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I) 수익증권 : <u>최소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투자하는 개인, 최소 5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투자하는 법인</u>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F) 수익증권: <u>기관투자자, 기금, 100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개인, 500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법인, 특정금전신탁</u>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채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모투자신탁의 투자방식 일부 변경	-	(추가)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산정방법, 공시방법 및 장소: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속한 피델리티펀드는 다양한 하위 펀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델리티 EMEA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p>각 하위펀드 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정관에 따라 개별 하위펀드의 기준통화로 결정됩니다. 각 클래스의 순자산가치는 각 클래스의 주요거래통화로 결정됩니다. (...)</p> <p>*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집합투자업자보수 변경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u>연 0.80%</u>	<p>집합투자업자보수율 : <u>최초 설정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연 0.80%</u> <u>2021년 12월 1일 이후: 연 0.10%</u></p>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일반사무관리보수 변경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u>연 0.028%</u>	<p>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u>최초 설정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연 0.028%</u> <u>2021년 12월 1일 이후: 연 0.022%</u></p>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모투자신탁의 투자방식 일부 변경 정보 업데이트	<p>[총보수 및 비용]</p> <p>※ 기타비용은 증권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상기 작성기준일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기타비용 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되었습니다.(...)</p> <p>※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거래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p> <p>※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비용을</p>	<p>[총보수 및 비용]</p> <p>※ 기타비용은 증권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상기 작성기준일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기타비용 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됩니다. (...) 또한, 투자신탁이 '주식형'에서 '주식-재간접형'으로 변경되는 것을 감안하여,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비용은 위 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이 재간접형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p> <p>(...)</p> <p>※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비용을</p>

피델리티 EMEA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진 기준)으로 나눈 값과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u>피투자</u>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진 기준)으로 나눈 값과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u>외국</u>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u>외국</u> 집합투자기구의 직전 회계연도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u>외국</u> 집합투자기구로부터 환급 받는 금액을 반영하여 연 1.13%로 추정하였음)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모투자신탁의 투자방식 일부 변경 정보 업데이트	(2) 모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기타비용은 증권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상기 작성기준일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기타비용 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되었습니다. ※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거래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 보수·비용 비율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u>피투자</u>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2) 모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기타비용은 증권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상기 작성기준일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기타비용 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됩니다. <u>다만, 투자신탁이 ‘주식형’에서 ‘주식-재간접형’으로 변경되는 것을 감안하여,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비용은 위 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u> ※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이 재간접형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 보수·비용 비율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u>외국</u>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u>외국</u> 집합투자기구의 직전 회계연도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u>외국</u> 집합투자기구로부터 환급 받는 금액을 반영하여 연 1.13%로 추정하였음)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피델리티 EMEA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정보 업데이트	정보 전반	(업데이트)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모투자신탁의 투자방식 일부 변경	(1) 이익 등의 배분 (...) 또한, 수익자가 이익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당일포함) <u>제9영업일</u> 전에 판매회사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1) 이익 등의 배분 (...) 또한, 수익자가 이익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당일포함) <u>제11영업일</u> 전에 판매회사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모투자신탁의 투자방식 일부 변경	[모투자신탁의 자산 구성 현황]에 대한 주석 주)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임.	[모투자신탁의 자산 구성 현황]에 대한 주석 주)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임. 다만, 위 자산구성현황은 모투자신탁이 ‘주식형’에서 ‘주식-재간접형’으로 변경되기 이전의 현황정보이므로, 변경 후 자산구성현황은 위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모투자신탁의 투자방식 일부 변경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추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정보 업데이트	요약 재무내용 등	(업데이트)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정보 업데이트	운용자산 규모 등	(업데이트)

피델리티 EMEA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라. 운용자산 규모			
[붙임] 용어풀이			
[붙임] 용어풀이	기재 업데이트	-	(추가) 전환: 수익자의 요청으로 하나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환대상 투자신탁: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상호 전환 가능한 투자신탁을 말합니다.

※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1]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명칭: 피델리티 EMEA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등록신청서 최초 제출일: 2009년 4월 15일

구분	주요내용
1. 투자목적	- MSCI Emerging EMEA 지수에 따라 이머징 시장으로 간주되는 중부유럽, 동유럽(러시아 포함), 남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영업활동의 대부분이 동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해외 기업의 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추구 -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의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2. 주요투자전략	- 투자신탁 자산을 EMEA 관련 주식(제2부 8. 가. (2)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에서 정의됨)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함 -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헤지하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최고 95.5% 수준
3. 주요투자위험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및 환율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참고)

[표 2]

(1)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피델리티 EMEA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구분	주요 내용
등록신청서 최초 제출일	- <u>2009년 4월 15일</u>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추구하고자 함 -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피델리티펀드 - EMEA 펀드(Fidelity Funds - Emerging Europe, Middle East and Africa Fund)로서, 이

	<p>외국 집합투자기구는 MSCI EM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지수에 따라 신흥시장으로 판단되는 국가들을 포함, 중부유럽, 동유럽, 남유럽(러시아 포함), 중동 및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국가에 그 본사를 두고 있거나 사업활동의 대부분이 당해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회사의 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투자목적으로 함.</p> <p>-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p>
주요 투자대상 및 투자전략	<p>- 이 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함</p> <p>-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헤지하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최고 95.5% 수준</p>
주요 투자위험	<p>-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모투자신탁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반위험(투자원금손실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위험, 환율변동 위험), 모투자신탁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수위험(분산투자관련위험, 국가위험, 신흥시장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재간접투자위험, 가격조정정책관련 위험, 외국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 위험,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외국 집합투자기구 설립지 국가 위험, 외국 집합투자업자 관련 위험) 및 기타 투자위험(유동성위험, 환매위험,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 해지위험)이 있음</p> <p>-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및 환율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참고)</p>

[표 3]

(2)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1) 외국주식	60% 이상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서 법 제 4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해당되는 지분증권은 제외합니다) 및 법 제 4 조 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의탁증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 “외국주식”이라 합니다)
2) EMEA 관련 주식	60% 이상	MSCI Emerging EMEA 지수에 따라 이머징 시장으로 간주되는 중부유럽, 동유럽(러시아 포함), 남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영업활동의 대부분이 동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 기업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제 1 호의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 “EMEA 관련 주식”이라 합니다)
3) 외국채권	40% 이하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서 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사채권(제 4 호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외합니다)의 성질을 구비한 것(이하 “외국채권”이라 합니다)
4) 외국자산 유동화채권	40% 이하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 “외국자산유동화채권”이라 합니다)
5) 외국어음	40% 이하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서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이하 “외국어음”이라 합니다)
6) 국내외의		국내외 금리스왑거래. 단,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금리스왑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7) 장내파생상품	장내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이하	법 제 5 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이하 “파생상품”이라 합니다)로서 법 제 5 조 제 2 항 각 호에 의한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것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합니다)
8) 장외파생상품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 (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합니다)
9)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40% 이하 (외국 사모집합투자증권 등의 경우 5% 이하)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서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법 제 9 조 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 “외국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합니다)
10)외국파생결합증권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서 법 제 4 조 제 7 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결합증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이하 “외국파생결합증권”이라 합니다)
11)증권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12)환매조건부매도		환매조건부(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13)증권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4) 금전차입		법 제 83 조 제 1 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의 차입(이하 “금전의 차입”이라 합니다) 다만, 금전의 차입은 그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15)기타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 83 조 제 4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합니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정됩니다). 추가로,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p>다음 각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호 내지 9)호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회계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계약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을 구성하는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위 1)호 내지 9)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 <p>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신탁재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p>		

[표 4]

(2) 모두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1) 집합투자증권	50% 이상	법 제 9 조 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유사한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p>것으로서 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증권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합니다). 다만, 신탁계약 제 1 조 제 2 항의 투자목적에 따른 외국주식 및 주식관련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다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합니다.</p> <p>피델리티펀드 - EMEA 펀드(Fidelity Funds - Emerging Europe, Middle East and Africa Fund)</p>
2) 수익증권 등	40% 이하	<p>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및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서 이러한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 “수익증권등”이라 하며, 위 1) 집합투자증권은 제외됩니다)</p>
3) 장내파생상품	장내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 이하	<p>법 제 5 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이하 “파생상품”이라 합니다)로서 법 제 5 조 제 2 항 각 호에 의한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것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합니다.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합니다)</p>
4) 장외파생상품		<p>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합니다. 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합니다)</p>
5) 금전차입		<p>법 제 83 조 제 1 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의 차입(이하 “금전의 차입”이라 합니다). 다만, 금전의 차입은 그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p>
6) 환매대금으로 지급받은 현물		<p>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환매대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 받은 해당 현물</p>
7) 기타		<p>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 83 조 제 4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합니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정됩니다) 3. 상기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p>추가로,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p> <p>모투자신탁이 ‘주식형’에서 ‘주식-재간접형’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외국주식등(법 제 4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되어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불가피하게 보유하는 경우 그 외국주식등 및 이와 관련하여 변경 이후 취득하게 된 외국 주식등</p>
<p>다음 각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호 내지 4)호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 또는 모투자신탁이 ‘주식형’에서 ‘주식-재간접형’으로 변경되어 효력발생한 날로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회계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계약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을 구성하는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위 1)호 내지 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신탁재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표 5]

다.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100%까지 피델리티펀드 - EMEA펀드(Fidelity Funds - Emerging Europe, Middle East and Africa Fund)에 투자합니다.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속한 피델리티펀드는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투자회사(Umbrella Type Fund)로서, 피델리티펀드는 다양한 하위 펀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하위펀드는 고유의 투자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펀드의 자산은 각 하위펀드에 의해 보유됩니다.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룩셈부르크 법률 및 규정, 피델리티 펀드의 정관에 따라 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이므로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열람가능한 장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fidelity.co.kr)와 외국 집합투자기구 판매회사의 영업점입니다.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피델리티펀드(Fidelity Funds)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명칭	- 피델리티펀드 (Umbrella Fund) - 하위펀드 명칭: 피델리티펀드 - EMEA 펀드(Fidelity Funds - Emerging Europe, Middle East and Africa Fund) - 종류: 클래스 A-ACC-USD
외국 집합투자기구 설정일	- 2007년 6월 11일
자본시장법상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록일	- 2009년 5월 3일
외국 집합투자기구 규모	- USD 669백만 (2021년 9월말 현재)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변동자본 투자회사(SICAV), 증권집합투자기구,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외국집합투자업자(외 국관리회사)	- FIL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룩셈부르크) 에스에이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	- FIL 펀드 매니지먼트 리미티드
주요 투자대상	- MSCI EM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지수에 따라 신흥시장으로 판단되는 국가들을 포함, 중부유럽, 동유럽, 남유럽(러시아 포함), 중동 및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국가에 그 본사를 두고 있거나 사업활동의 대부분이 당해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회사의 증권에 주로 투자함. - 중부유럽, 동유럽, 남유럽(러시아 포함), 중동 및 아프리카의 저개발국가들에 투자하며 이 지역 내의 다양한 국가들에 투자할 수 있음. 해당 지역의 어느 국가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 현행 룩셈부르크 규정상 펀드는 정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 증권에 순자산의 최고 10%까지 투자할 수 있음. 일부 러시아 증권에 대한 투자는 이러한 투자한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기타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속한 피델리티펀드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내용:

-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고난도상품 해당여부, 간이투자설명서 보수비용 정보 등)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반영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등)
- 위험문구 추가
- 정보 업데이트
- 기재 수정 등

▶ 변경내용:

피델리티 미달러 채권 증권 자투자신탁 H (채권-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문서전반	기재 명확화	(...)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의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요약정보	정보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내용 기재	(업데이트) *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되는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신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	(추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 없음 (추가) 총 보수·비용 정보 (외국 집합투자기구 보수·비용 포함) *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되는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신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	(추가)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정보 업데이트	운용현황 등	(업데이트)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다.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주식 추가	-	(추가) ※ 복수의 운용전문인력이 공동으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펀드 수 및 규모)'가 중복 또는 과대 산정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집합투자기구 관련 정보가 특정 운용전문인력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펀드 수 및 규모)'로만 산입되며 모든 운용전문인력에 대하여 중복하여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펀드 수 및 규모)' 정보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피델리티 미달러 채권 증권 자투자신탁 H (채권-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실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펀드 수 및 규모)'보다 적게 기재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1)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위험문구 추가 기재 수정	피델리티 미달러 채권 증권 모투자신탁 H (채권-재간접형) 주요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반위험 (투자원금손실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위험, <u>국가위험</u> , 환율변동 위험), 모투자신탁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수위험 (분산투자관련위험, 신흥시장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재간접투자위험, 가격조정정책관련 위험, 외국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 위험, 하이일드채권(고수익·고위험 채권) 투자위험, 신용디폴트스왑(CDS) 투자위험, 금리변동 위험,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및 기타 투자위험(...)이 있음	피델리티 미달러 채권 증권 모투자신탁 H (채권-재간접형) 주요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반위험 (투자원금손실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위험, 환율변동 위험), 모투자신탁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수위험 (분산투자관련위험, 신흥시장위험, <u>국가위험</u> , 신흥시장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재간접투자위험, 가격조정정책관련 위험, 외국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 위험, 하이일드채권(고수익·고위험 채권) 투자위험, 신용디폴트스왑(CDS) 투자위험, 금리변동 위험,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u>외국 집합투자기구 설립지 국가 위험, 외국 집합투자업자 관련 위험</u>), 및 기타 투자위험(...)이 있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재간접형 구조	정보 업데이트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주요 내용 등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재간접형 구조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반영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주요 내용 피델리티펀드-미달러채권펀드 기타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주요 내용 피델리티펀드-미달러채권펀드 기타 - <u>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순자산의 최소 50%를 지속가능적 특성을 유지하는</u>

피델리티 미달리 채권 증권 자투자신탁 H (채권-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 -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피델리티펀드의 채권형 펀드에 속하는 펀드로서, 하위펀드 투자목적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투자적격등급 이하 또는 하이일드 증권에 대한 투자는 각 하위펀드 순자산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임 <u>(2019년 12월자 피델리티펀드(Fidelity Funds) 글로벌 투자설명서 기준)</u>	것으로 간주되는 증권들에 투자하며, 지속적으로 폭넓은 환경·사회적 특성들을 고려할 것임. -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피델리티 지속가능 투자 체계(Fidelity Sustainable Investing Framework)를 준수함으로써 환경·사회적 특성들을 촉진시킴. (...) -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피델리티펀드의 채권형 펀드에 속하는 펀드로서, 하위펀드 투자목적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투자적격등급 이하 또는 하이일드 증권에 대한 투자는 각 하위펀드 순자산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피델리티펀드(Fidelity Funds)의 투자 설명서를 참고바람.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정보 업데이트	관련 국가 현황 등	(업데이트)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위험문구 추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기재 수정	국가위험: 모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므로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 쿼터 등을 통해 <u>역내 중국 고정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u> , 중국에서의 관련 법규정의 불확실성과 변동이 해당 투자신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국가위험: 모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u>외국</u>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므로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 <u>지위</u> 등을 통해 <u>중국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u> , 중국에서의 관련 법규정의 불확실성과 변동이 해당 투자신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추가) <u>외국 집합투자기구 설립지 국가 위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룩셈부르크에서 설립되었으며, 룩셈부르크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습니다. 투자자들은 자국 금융 감독 기관에서 제공하는</u>

피델리티 미달러 채권 증권 자투자신탁 H (채권-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p>모든 규제 보호 장치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p> <p>외국 집합투자업자 관련 위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경영 및 재무상태, 운용인력의 교체 등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모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투자 관련 업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p> <p>*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정보 업데이트	정보 전반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실적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정보 업데이트	정보 전반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정보 업데이트	요약 재무내용 등	(업데이트)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정보 업데이트	운용자산 규모 등	(업데이트)

※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내용:

-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고난도상품 해당여부, 간이투자설명서 보수비용 정보 등)
-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반영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등)
- 위험문구 추가
- 정보 업데이트
- 기재 수정 등

▶ 변경내용:

피델리티 미달러 채권 증권 자투자신탁 UH (채권-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문서전반	기재 명확화	(...)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의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요약정보	정보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내용 기재	(업데이트) *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되는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신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	(추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 없음 (추가) 총 보수·비용 정보 (외국 집합투자기구 보수·비용 포함) *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되는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신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	(추가)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정보 업데이트	운용현황 등	(업데이트)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다.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에 주식 추가	-	(추가) ※ 복수의 운용전문인력이 공동으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펀드 수 및 규모)'가 중복 또는 과대 산정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집합투자기구 관련 정보가 특정 운용전문인력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펀드 수 및 규모)'로만 산입되며 모든 운용전문인력에 대하여 중복하여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펀드 수 및 규모)' 정보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실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피델리티 미달러 채권 증권 자투자신탁 UH (채권-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u>‘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펀드 수 및 규모)’보다 적게 기재될 수 있습니다.</u>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정보 업데이트	판매수수료선취형(A) 및 판매수수료미징구형(C)의 총비용 일치 시점 등 판매수수료선취형(A-e) 및 판매수수료미징구형(C-e)의 총비용 일치 시점 등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1) 모두자신탁에 관한 사항	위험문구 추가 기재 수정	피델리티 미달러 채권 증권 모두자신탁 UH (채권-재간접형) 주요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반위험 (투자원금손실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위험, <u>국가위험</u> , 환율변동 위험), 모두자신탁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수위험 (분산투자관련위험, 신흥시장위험, 과생상품투자위험, 재간접투자위험, 가격조정정책관련 위험, 외국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 위험, 하이일드채권(고수익·고위험 채권) 투자위험, 신용디폴트스왑(CDS) 투자위험, 금리변동 위험,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및 기타 투자위험(...)이 있음	피델리티 미달러 채권 증권 모두자신탁 UH (채권-재간접형) 주요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반위험 (투자원금손실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위험, 환율변동 위험), 모두자신탁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수위험 (분산투자관련위험, <u>국가위험</u> , 신흥시장위험, 과생상품투자위험, 재간접투자위험, 가격조정정책관련 위험, 외국집합투자증권 가격변동 위험, 하이일드채권(고수익·고위험 채권) 투자위험, 신용디폴트스왑(CDS) 투자위험, 금리변동 위험,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u>외국 집합투자기구 설립지 국가 위험, 외국 집합투자업자 관련 위험</u>), 및 기타 투자위험(...)이 있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재간접형 구조	정보 업데이트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주요 내용 등	(업데이트)

피델리티 미달러 채권 증권 자투자신탁 UH (채권-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재간접형 구조	글로벌 투자설명서 갱신 반영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주요 내용 피델리티펀드- 미달러채권펀드 기타 (...) -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피델리티펀드의 채권형 펀드에 속하는 펀드로서, 하위펀드 투자목적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투자적격등급 이하 또는 하이일드 증권에 대한 투자는 각 하위펀드 순자산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임 <u>(2019년 12월자 피델리티펀드(Fidelity Funds) 글로벌 투자설명서 기준)</u>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주요 내용 피델리티펀드- 미달러채권펀드 기타 - <u>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순자산의 최소 50%를 지속가능적 특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증권들에 투자하며, 지속적으로 폭넓은 환경·사회적 특성들을 고려할 것임.</u> - <u>외국 집합투자기구는 피델리티 지속가능 투자 체계(Fidelity Sustainable Investing Framework)를 준수함으로써 환경·사회적 특성들을 촉진시킴.</u> (...) -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피델리티펀드의 채권형 펀드에 속하는 펀드로서, 하위펀드 투자목적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투자적격등급 이하 또는 하이일드 증권에 대한 투자는 각 하위펀드 순자산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임. - <u>보다 자세한 내용은 피델리티펀드(Fidelity Funds)의 투자 설명서를 참고바람.</u>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정보 업데이트	관련 국가 현황 등	(업데이트)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위험문구 추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기재 수정	국가위험: 모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므로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u>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 쿼터 등을 통해 국내 중국 고정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중국에서의 관련 법규정의 불확실성과 변동이 해당 투자신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u>	국가위험: 모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므로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u>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 지위 등을 통해 중국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중국에서의 관련 법규정의 불확실성과 변동이 해당 투자신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u>

피델리티 미달러 채권 증권 자투자신탁 UH (채권-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	<p>(추가) 외국 집합투자기구 설립지 국가 위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룩셈부르크에서 설립되었으며, 룩셈부르크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습니다. 투자자들은 자국 금융 감독 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규제 보호 장치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p> <p>외국 집합투자업자 관련 위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경영 및 재무상태, 운용인력의 교체 등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모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투자 관련 업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p> <p>*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정보 업데이트	정보 전반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정보 업데이트	정보 전반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정보 업데이트	요약 재무내용 등	(업데이트)
1. 집합투자업자	정보 업데이트	운용자산 규모 등	(업데이트)

피델리티 미달러 채권 증권 자투자신탁 UH (채권-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